

- 농업·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- 농민 공익수당 안내문

2021년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신 농가는, 다음 사항을 충족하고 이행하셔야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

1.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가 2018. 12. 31일부터 2021. 5. 31일까지 도내에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 - 2021.5.31일 이전에 타 시·도로 전출할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미 지급
 - 2021.6.1일 이후 타 시·도로 전출할 경우 올해는 지급하고 2022년부터 미 지급
2. 농업 환경보전 등 농업·농촌 공익기능이 유발될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.

(농가 의무 준수사항 : 3가지)

- ① 논·밭에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면서 배수로 관리, 논·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·관리해야 합니다.
- ② 양질의 농지를 유지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 적정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③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❑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, 비료 사용기준을 초과할 경우, PLS 등 농약 사용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고 5년간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


(양봉농가 의무 준수사항 : 3가지)

- ① 양봉농가 등록기준 규모를 갖추고 실제 양봉업에 종사해야 합니다.
- ②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봉 산물 생산을 위해 적정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.
- ③ 꿀벌의 방역을 위해 적정 소독장비를 구비, 사업장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.

▶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, 규정된 시설장비, 약품을 갖추지 않을 경우 최고 5년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(농가·양봉농가 자율실천사항 : 농업·농촌 환경실천 협약)

- 농지 주변, 거주 마을 등의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고 후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.

3.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.

- 2019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사람
-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 있는 사람
- 농지, 산지,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
- 농업부산물, 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
- 지급대상자와 동일 거소(주택)에서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를 분리한 사람